##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42

발의연월일: 2022. 9. 14.

발 의 자: 김수흥·강득구·기동민

김교흥 · 김민석 · 맹성규

안규백 · 이명수 · 정일영

최인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도서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 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
례) ①・② (생 략)	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u>2022년 12월 31일</u>	③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	
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	
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	
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	
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